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비전임교원의 임용 자격, 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비전임교원의 구분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명예교수 : 본교에서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중 공적이 뛰어나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
- ② 석좌교수 :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이 있어 임용된 교원
- ③ (해외)초빙교수 : 해당분야의 이론 또는 실무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자로서 본교의 특별한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된 교원
- ④ 겸임교원 : 외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 ⑤ 초빙강의교수 : 본교의 특별한 교육목적 수행에 합당한 자로서 해당분야의 강의를 전담하여 담당하는 교원
- ⑥ 객원교수 :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업적이 뛰어난 외국인 학자, 외국에 있는 한국인 학자, 국내의 타 대학교, 연구소 또는 기타 기관의 학자로서 본교의 특별한 교육 및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 ⑦ 특임교수 : 특정 분야에 능력과 실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용된 교원
- ⑧ 연구교수 : 본교의 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 ⑨ 교환교수 : 본교와 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본교에서 일정기간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 ⑩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 ⑪ 전담교수 :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 ⑫ <삭제>

제3조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1.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복무) 비전임교원의 복무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계약세부사항) ① 비전임교원의 근무기간, 임금, 강의시간 등은 임용시 계약으로 정한다.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대상자별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교원인사위원회)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의3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재직 중인 비전임교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 2 장 명예교수

제6조 (자격) ① 명예교수 추대는 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기간 중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단, 학교에 현격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추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명예교수 추대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7조 (추대절차) ① 명예교수의 추대는 소속학과(전공)와 학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학과(전공)의 추천 없이 학장의 추천으로 추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를 추대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추대 청원서
2.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서
3.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4. <삭제>

제8조 (예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에 관한 특별강의를 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는 본 대학의 제반의식에 있어서 본 대학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으며 신분증 발급, 도서관 이용 등의 편의를 받는다.

제9조 (추대취소 및 회복) ① 명예교수로 추대된 경우라 할지라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나 본 대학 복무규정 제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명예교수 추대가 취소되었어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본인의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직을 회복할 수 있다.

제10조 (임용기간) 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종신으로 한다.

제11조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 ① 명예교수에 대하여는 그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비와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연구비와 특별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석좌교수

제12조 (자격) 석좌교수의 자격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이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 (임용절차) 석좌교수의 임용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저명인사가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4조 (구비서류) 석좌교수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추천서
3.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15조 (임용기간 등) ①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제 4 장 초빙교수

제16조 (자격) 초빙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교육법이 정하는 대학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해당분야의 이론 또는 실무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자로서 본교의 특별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구분) 초빙교수 중 해외에서 활동중인 자를 위촉할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초빙교수의 명칭을 사용한다.

제18조 (임용절차) 초빙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9조 (구비서류) 초빙교수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20조 (임용기간 등) ①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월 또는 학기단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빙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제 5 장 겸임교원

제21조 (자격) 겸임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교육법이 정하는 대학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과 전공이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3. 본 대학교의 교원 인사규정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생지도가 가능하고 소속 부서장 및 학부(과)장의 동의를 받은 자

제22조 (임용절차) 겸임교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구비서류) 겸임교원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매 학기 개강일 전까지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빙요청서
2. 해당학과(전공) 추천서
3. 겸임교원 지원서
4.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6. 본직기관의 겸임동의서
7.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24조 (임용기간 등) ①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임교원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제25조 (강의시간) 겸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초빙강의교수

제26조 (자격) 초빙강의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교육법이 정하는 대학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기타 관할청에서 정한 초빙교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강의를 전담할 수 있는 자

제27조 (임용절차) 초빙강의교수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구비서류) 초빙강의교수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매학기 개강일 전까지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빙요청서
2. 해당학과(전공) 추천서
3. 초빙강의교수 지원서
4.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29조 (임용기간 등) ① 초빙강의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빙강의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제30조 (강의시간) 초빙강의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객원교수

제31조 (자격) 객원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교육법이 정하는 대학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학자로서 본교의 교육 및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

제32조 (임용절차) 객원교수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구비서류) 객원교수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빙요청서
2. 객원교수 지원서
3.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해당학과(전공) 추천서
6.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34조 (임용기간 등) ①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원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7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제 8 장 특임교수

제35조(자격) 특임교수의 자격은 특정 분야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있어 본교 교육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36조 (임용절차) 특임교수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구비서류) 특임교수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38조 (임용기간 등) ①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목적에 의해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임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7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제38조의2 (보직) 총장은 본교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임교수를 보직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연구교수

제39조 (자격) 연구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연구경력자
2. 임용일 현재 본교에서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자

제40조 (임용절차) 연구교수는 해당연구소장의 추천과 산학협력단장의 임용요청을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이 위촉한다.

제41조 (구비서류) 연구교수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교수 추천서
2. 연구교수 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
3. 졸업증명서(학, 석, 박사)
4. 경력증명서
5.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42조 (임용기간 등) ①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동일하게 하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단위로 재임용 한다.

② 연구교수는 연구를 위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의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제 10 장 교환교수

제43조 (자격) 교환교수의 자격은 본교와 협정을 맺은 교류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제44조 (임용절차) 교환교수의 임용은 교류대학의 추천 자 중에서 해당학과(전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제45조 (구비서류) 교환교수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국제교류단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최종학위 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여권사본
5. 학과(전공)의견서
6.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46조 (임용기간 등) ① 교환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제 11 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제47조(자격 등) ①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12 장 전담교수

제48조(자격) 전담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교육법이 정하는 대학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제49조(임용절차) 전담교수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0조(구비서류) 전담교수 추천시 다음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이력서
3.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51조(임용기간 등) ① 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월 또는 학기단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겸임교원 임용규정, 초빙교수 인사규정,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0조, 제41조 개정 <'09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9항, 제43조 개정 <2012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6조제2호 개정 <2013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5조 개정 <2013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5조,제30조 개정 <2014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0조 개정 <2015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항 번호 변경, 동 조제10항 신설, 제11장 신설 <2017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개정 <2017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7항 및 동조제11항 개정, 제2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항 번호 변경, 제35조 개정, 제12장 및 제48조 내지 제51조 신설 <2018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15조제2항 삭제 <2018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개정, 제2조제12항 삭제, 제3조 개정,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 신설, 제5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신설, 제6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개정, 제42조제2항 신설, 제42조제3항 항 번호 변경 <2019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6조 제1항 개정, 제6조 제2항 신설, 제7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9조 조 제목, 제9조 제1항 개정, 제9조 제2항 신설, 제36조, 제38조 제1항 개정, 제38조의2 신설 <2020 제27차 교무위원회>)